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2. .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식생활 교육 성과가 우수한 학교 및 어린이집을 우대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하고, 대학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사회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에 포함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 가. 학교의 정의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사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함(안 제2조).
- 나.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추가함(제26조).
- 다.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식생활 교육 성과가 우수한 학교 및 어린이집에 대한 우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26조 및 안 제26조의2).
- 라. 대학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사회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에 명시하여 포함함(안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
- 마.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중 사회식생활 교육 전

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26조의4).

바. 식생활 교육의 달에 관한 사항을 식생활 교육주간에 관한 사항
으로 수정함(안 제26조의5).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4호 중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학교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학교”를 “학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
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학교”를 각각 “학교 및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및 「영유
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교육교재 개발, 과일·채소 등 간식,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
으며, 식생활 교육 성과가 우수한 학교 및 어린이집을 우대할 수 있
다.

안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사회에서의 식생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
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 사회식생활 교육(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활
성화를 위하여 사회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필요한 경
비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안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3(식생활 교육주간)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한다.

안 제26조의4 및 제26조의5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각각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u>학교</u> 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u>학교</u> <u>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u> -----.	제2조(정의) ----- ----- ----- -. 1. ~ 3. (개정안과 같음) 4. ----- ----- ----- ----- <u>학교</u> -----.
제26조(<u>학교</u> 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생략)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과일·채소 등 간</u>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현행과 같음)	제26조(<u>학교</u>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개정안과 같음)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u>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식,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u>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학교</u>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학교</u>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수		<u>“어린이집”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교육교재 개발, 과일·채소 등 간식,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식생활 교육 성과가 우수한 학교 및 어린이집을 우대할 수 있다.</u> ③ ----- -----<u>학교</u> <u>및 어린이집</u>---- ----- ----- ----- ----- ----- --. ④ ----- -----<u>학교</u> <u>및 어린이집</u>---- ----- -----

현행	개정안	수정안
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26조의2(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규 교과과정에 식생활 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식생활 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 ----- ----- ----- ----- -----. 제26조의2(사회에서의 식생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 사회식생활 교육(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를 지정 하였을 때에는 농 림축산식품부 인 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 법으로 공고하여 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 활 교육 우수학교 에 식생활 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행	다.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u>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⑤ 제1항에 따른 <u>식생활 교육 우수 학교의 지정 기준, 절차, 방법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제26조의3(대학에서의 <u>식생활교육 지원</u>)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u>식생활 교육 강좌 개설을 권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생활 체험 및 교육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u>	<삭제> 제26조의3(식생활 <u>교육주간</u>) 국민의 <u>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년을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한다.</u>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u>육 프로그램의</u> <u>개발 및 보급</u> 2. <u>국가기관, 군부</u> <u>대, 기업 및 사</u> <u>회·종교 단체</u> <u>등에서의 사회식</u> <u>생활 교육</u> 3. <u>사회식생활 교</u> <u>육 전문인력의</u> <u>양성 및 활용</u> 4. <u>그 밖에 사회식</u> <u>생활 교육의 활</u> <u>성화를 위하여</u> <u>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사항</u> 제26조의5(식생활 교육의 달) 국민 의 건전한 식생활 을 유도하고 식생 활 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개월을 식생활 교육의 달로 한	<삭 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다.</u>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8
----------	-----

발의연월일 : 2024. 6. 13.

발 의 자 : 이병진 · 이연희 · 윤준병
송옥주 · 윤건영 · 주철현
윤후덕 · 홍기원 · 한정애
추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린이집을 그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식생활 교육의 확산을 위해서는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으며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정부가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식생활 교육의 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

린이집을 포함하고,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급식 운영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도 식생활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정의에 포함함(안 제2조제4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규 교과과정에 식생활 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식생활 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식생활 교육 강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3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회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4 신설).

마.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 유도과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개월을 식생활교육의 달로 함(안 제26조의5 신설).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가. 학교의 정의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사항을 삭제함.(안 제2조).

나.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추가함(제26조).

다.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식생활 교육 성과가 우수한 학교 및 어린이집에 대한 우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26조 및 안 제26조의2).

라. 대학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사회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에 명시하여 포함함(안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

마.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중 사회식생활 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26조의4).

바. 식생활 교육의 달에 관한 사항을 식생활 교육주간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함(안 제26조의5).

법률 제 호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학교”를 “학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학교”를 각각 “학교 및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교육교재 개발, 과일·채소 등 간식,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식생활 교육 성과가 우수한 학교 및 어린이집을 우대할 수 있다.

제4장에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사회에서의 식생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 사회식생활 교육(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6조의3(식생활 교육주간)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u>학교</u> 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생 략)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과일·채소 등 간식,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u>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학교</u> 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학교</u> 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 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u><신 설></u>	제26조(<u>학교 등</u> 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교육교재 개발, 과일·채소 등 간식,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식생활 교육 성과가 우수한 학교 및 어린이집을 우대할 수 있다.</u> ③ ----- <u>학교</u> <u>및 어린이집</u> ----- ----- ----- -----. ④ ----- <u>학교</u> <u>및 어린이집</u> ----- ----- ----- ----- ----- -----. <u>제26조의2(사회에서의 식생활 교</u>

현행	개정안
<신설>	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 사회식생활 교육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6조의3(식생활 교육주간) 국민 의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식생활 교 육주간으로 한다.